

평양

평양국 제토론회 토론문

1993, 11, 7~8

이호근
7-8

필리핀에서의 위안부들의 실태와 그 제도화

아세아여성인권리사회

로테스 인다이 사흐르

필리핀에서의 위안부들의 실태와 그 제도화

위안부를 제도화하는것은 의심할바 없이 유사 이래 여성들에게 감행한 성적폭행과 차별의 가장 극심한 형태들중의 하나이다.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성노리개로 어떻게 취급당했는가를 그토록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없다. 이러한 남성지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허가된 매춘부들이 존재하였으며 여성들의 인권이 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무시되어있던 일본에서 제도화되었다.

일본과 같은 남성지배주의사회에서 여성들은 두가지 부류로 취급되었다. 한부류는 앞으로 군인이 될 아들들을 낳아주는 의미에서의 여성, 또 한부류는 남자들에게 쾌락을 주는 의미에서의 여성이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갈 때 아세아에서의 전쟁수행계획의 일부분으로 된것은 전투장에서 용감하게 싸울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하여 위안부를 모집하는것이였다. 위안부모집은 병참 및 군수물자조달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성들은 전쟁수단의 하나로써 사용되었고 유린당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죽음까지 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현대전규범에서는 강간을 금지하므로 위안부를 설치하는것이 적절하고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또한 군사적지역주둔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간을 눈감아 주는것으로 하여 주민들로부터 증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위안소 또는 군대유곽을 설치하는것은 일본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의 한부분으로써 일본군대의 쾌락과 기타 필요를 위해 점령국 여성들을 명령, 모집, 강제유괴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1930년대초에 아세아대륙을 침략하자 즉시 군대유곽설치에 착수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1932년 상해사변후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위안소의 체계적인 설치는 세가지 목적으로 부터 진행되었다.

첫째로, 점령지역들에서 여성들에 대한 일본군병사들의 대대적인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둘째로, 있을수 있는 성병전염을 막기 위해서였다.

셋째로, 정탐을 막기 위해서였다. 만약 일본군병사들이 점령지역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면 이 여성들을 통해 군사비밀이 새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목적으로부터 일본군병사들은 조선여성들과 지어 일본여성들까지도 동원시켜 위안부로 만들어 그들을 위안소들에 보냈다.

그들은 애젊은 조선여성들을 유괴하거나 속여 조선인민에 대한 인종주의로 인하여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지역들로 끌어갔다. 그들은 성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직 성적채험이 전혀 없으므로 깨끗하다고 간주되는 애젊은 여성들을 끌어가기 위해 노연하였다.

조선여성들이 일본말이나 점령지역나라 말을 모르기때문에 정탐행위도 방지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1941년 12월 8일에 시작된 일본에 의한 필리핀강점은 필리핀인민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이룩할수 없었다.

그 주요원인은 《흑발라합》(반일인민군)으로 알려진 필리핀유격대의 강력한 항전이었다. 결과 일본군은 필리핀에 조선위안부들을 일부밖에 데려오지 못하였다.

일본군은 물자부족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필요한것들은 점령지역에서 해결하는 정책을 곧 실시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에 필요한 식량, 건물, 쌀 기타 물자들을 로략질하는 점령지들에 대한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필리핀녀성들은 대대적인 강간의 희생물로 되었으며 병사들의 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본군에 강제로 련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많은 필리핀위안부가 생기게 되었다.

조선의 위안부와 필리핀의 위안부사이의 주요차이점의 하나는 현재 필리핀위안부들은 자기들이 있던 위안소들의 위치를 뻗어 낼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끌려간 지역에서 주둔부대나 건물에 배치되어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자매들은 군대와 함께 조선뿐아니라 다른 점령국들에서 이동하여 다녀야 했으므로 4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지역들을 지적하기 어렵게 되었던것이다.

현시점에서 위안부에 관한 전체적인 표상은 아직까지도 명백치 않은 상태에 있다. 그것은 일본 전쟁문서고에서 제한된 자료밖에 얻을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하고 힘있는 증거는 희생자들의 증언이다. 위안부들과 다른 전쟁희생자들사이의 차이란 그것이 여러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성폭행을 통하여 악독한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감행하였다는데 있다.

커다란 곤난들과 수치감, 사회적 및 가정적 압박감을 무릅쓰고 이 사실에 대해 말한 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의 증언들이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고 본질적인 것으로 되는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사실과 그 존재에 대하여 밝히는 자료로서 그 신빙성과 가치는 50년이상이나 그들에게 들쭉여진 부정의에 대한 산 증거로 되는것이다.

- 소송제기

소송을 제기하는데서 기본력량은 1992년 7월에 필리핀에서 조직된 성노예조사그룹인 일본에 의한 필리핀종군성노예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조사단이다. 여러 여성단체들을 망라하고있는 이 특별조사단은 일본군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찾기 위하여 라디오를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을 리용하였다.

처음으로 그에 호응한 여성은 기소자들중의 한 사람인 마리아 로자 헨손이었다.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로자녀성의 대담성에 고무된 같은 처지의 다른 여성들도 나섰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기소자들은 정의를 되찾고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을 기소하여 소속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소속은 일본의 군사적침략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아세아나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의하여 국제도덕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소송건으로 추진되고있다.

오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집단적폭행을 받고있는것만큼 이 소송건은 정화가 실현된후 전시인권유린행위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것인

가 안할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구적인 소송건으로 되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은 수많은 범죄를 낳았다. 그러나 극히 적은 범죄들만이 들추어져 재판에서 처리되었다.

그러한 범죄들은 본질상 전쟁행정에서 접수될수 없는 행위들이다. 피고측인 일본군대는 국제인도주의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반하였다. 일본은 피해보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책임이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과 기관들은 즉시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데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여야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실행하며 국제사회제내에서 오늘 벌어지고있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성의있고 자각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미와자와 이전 수상의 공식사죄를 통하여 일본은 필리핀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였다.

일본이 다음으로 하여야 할것은 지난 시기 일본이 저지른 부정의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자기의 도덕적의무를 다하는것이다. 피해자들의 용서 하나만으로는 그러한 범죄를 감행한자들을 용서할수

없다. 이 소송에서 기본은 일본과 일본인민들이 정의를 되살리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다행히도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한데 의하면 지난 시기의 부정의의 피해자로 되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1992년 12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25%가 이전 《종군위안부》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지지하였으며 36%가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사죄도 보상도 필요없다고 한 사람들을 10%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새세대들이 자기들의 부정적인 지난 역사를 청산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표시로 된다. 이러한 태도는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저들의 아세아침략을 인정한 전후 일본, 《독재와 노예화, 억압과 협애성》을 청산할 의지를 밝힌 새로운 헌법을 채택한 전후 일본의 반영으로 된다.

오늘 기소자들은 로년기에 들어서고있다. 사람들은 사법기관들과 일본정부가 이 문제처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보상을 받고 정의를 되찾을수 있도록 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 필리핀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세계적 판도에서 진행되고있는 활동들에 대한 최근자료

(1993년 9월 24일 현재)

1993년 8월 24일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내전을 포함한 전쟁시에 감행된 체계적인 강간과 성노예행위, 기타 노예제적행위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별보고작성자를 임명할데 대하여 결심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전문가인 린다 차베스부인이 특별보고작성자로 임명되었다.

특별보고작성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들중의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감행한 성노예행위에 대한 해당한 사실자료들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분석과 결론을 하며 권고안을 작성하는것이다. 특별보고작성자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피해를 준 종군위안부들과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처지에 기초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문건들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주목할만한것은 일본이 유엔의 인권기구로부터 검토를 받기는 역사상 처음이라는것이다.

필리핀위안부 특별조사단은 라모스정부가 새로 구성된

일본정부로 하여금 필리핀여성들에 대한 전시성폭행행위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일본군에 의한 인권유린과 온갖 만행의 범위를 확정할수 있도록 모든 전시기록자료들을 공개할것을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필리핀위안부특별조사단은 또한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다 적절한 행동을 취할것을 라모스정부에 요구하였다.

첫째 ; 필리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조사를 진행할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 라모스정부는 남조선정부가 조선인종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한것처럼 필리핀종군위안부피해자들과 그 직계 가족들에게 재정적원조를 준다.

셋째 ; 라모스정부는 학교 교과서들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감행된 종군성노예만행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전쟁시기의 그러한 무서운 만행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그것이 온 세계가 찾아야 할 력사의 교훈으로 되도록 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는 필리핀종군위안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지 않고있

다. 정부는 필리핀종군위안부들의 위업을 밀고나갈 의향이 전혀 없는듯 하다.

현재 개별적인 정부기관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발전은 필리핀보건상 플라비에르와 필리핀보건부가 남아있는 필리핀종군위안부들이 3개의 정부병원들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는데 리용할수 있는 30장의 진료권을 내기로 결심한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에는 의약품의 무료보장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경의와 피해보상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매달 항의투쟁에 나서고있는 필리핀종군위안부문제조사단과 그 후원자들은 지난 9월 16일 애도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마닐라 마카리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침묵항의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일본정부와 필리핀정부, 유엔에 제기하는 자기들의 요구조건들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 항의 투쟁은 또한 모든 전시폭행피해자들, 특히 내전이 계속되고있는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여성반전항의자들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 진행되였다.

필리핀종군위안부기소자들의 제2차명단도 발표되였다.

지난 9월 20일 28명의 종군위안부들이 도표지방

법원에 기소장을 제기하였다.

결론 및 권고안

인권과 기본적자유에 대한 침해, 특히 대중적성격을 띠고 감행된 유린행위는 사실 용납할수 없다.

말하자면 그 어떤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여성들에게 가해진 심한 상처와 피해와 대비할수 없다. 그러나 정의의 측면에서 놓고볼때 폭행감행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따지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것이 중요하다.

7. 유엔

1.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감행한 만행은 그 죄가가 매우 크므로 유엔과 유엔산하의 여러 기구들과 위원회들은 여성전쟁피해자들의 처지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대의 성폭행만행과 같은 조직화된 강간은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로 되는것만큼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범죄는 철저히 처리해결되어야 한다.

2.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현대노예제에 관한 실무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고 귀중한 기여를 하고있지만 소위원회와 실무그룹이 제기하는 문제들과 권고안들은 유엔사무총장과 사무국, 유엔총

회, 안전보장리사회, 경제사회리사회, 인권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등을 다 동원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엔은 합리적인 재정적보상을 할수 있는 지침을 주고 란폭한 인권유린피해자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피해보상청구안을 해당정부들에 권고할수 있는 국제기구를 내놓수 있다.

4. 유엔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막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감행되는 그러한 범죄를 판결처리할수 있는 국제특별재판소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5. 인권유린을 감독통제하는 국제조약기구들은 인권유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국제조약기구들은 자기 성원국들의 활동을 총화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문제를 권고안과 결정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정 부

1. 정부들은 모든 폭행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보상을 할것을 유죄정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촉구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정부들이 모든 활동들에서 앞장서야 하지만 기타 모든 나라 정부들도 그들의 요구실현에 성의껏 나서야 할것이다.

2. 보상청구자들이 있는 나라의 정부들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조직, 그들의 대표들을 협조해주어야 할 것이다.

보상청구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제기하여 해결하는데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정부들은 보상청구자들이 국가나 유엔 혹은 유엔으로부터 보상청구청취를 위임받은 기구에 법적요구를 해오는 경우 유죄정부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청구실현에 쓰이도록 하는 문제를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ㄷ. 일본군대에 의한 성노예만행

1. 일본은 죽은 피해자들과 살아남은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일본은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만행의 피해자들로 확정된 여성들에게 완전한 재정적보상을 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3. 대부분의 여성들이 로 년기에 있는것만큼 일본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는것과 함께 개별적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소를 어떻게 운영하였고 여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였으며 그들을 어떻게 수송하였는가

등 전쟁문서고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5. 연합군에 속하였던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한 자기의 모든 문건들을 공개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6. 일본은 《종군위안부》라는 성노예형태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 일본의 전시범죄를 교과서와 역사책들에 참고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쟁과 군국주의, 인민들과 여성들에 대한 폭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정부들은 일본이 자기가 저지른 폭행들에 대한 도덕적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일본에 의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구성의 변화, 유엔헌장과 유엔의 활동에서의 변화를 절대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군에 의한 여성폭행문제는 긴급한 문제이다. 아세아의 위안부들은 죽기전에 정의를 되찾고 싶어하고 있다. 월남전쟁시기 몸을 유린당한 월남여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오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여성들

은 전쟁을 중지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다시는 감행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방글라데슈군대에 의하여 몸을 유린
당한 여성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것을 요구하고 있
다. 타이국경에서 버마군대에 의하여 몸을 더럽힌 카렌
지방 여성들, 유엔 평화감시군에 의하여 유린당한 캄보쟈녀
성들, 나라가 폐허로 되어가고 있는속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소말리아의 여성들, 이 모든 여성들과 기타 헤아릴수 없
이 많은 여성들은 정의를 짓밟히였다.

이 여성들, 모든 여성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차례질때
만이 우리 모두에게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